

1. 개정이유

남녀통합선발에 따른 경찰공무원 체력검사 방식의 구분 및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도입과 채용 분야별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나. 체력검사 방식을 종목식과 순환식으로 구분한 합격자 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43조 제1항 신설)

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남성의 일정 비율 이상 채용될 수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3조의3 제1항, 제2항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진행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1126호로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본문 중 “순경(항공경찰분야에 종사할 사람은 제외한다)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과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순경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하고,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경찰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를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을 경찰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3112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중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체력검사는 순환식 체력검사에서 우수등급을 받거나 종목식 체력검사에서 각 평가종목에 실격이 없고 전 평가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순환식 체력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과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험 : 2023년 1월 1일
2.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 : 2026년 1년 1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시험실시권)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순 경(항공경찰분야에 종사할 사람 은 제외한다)의 공개경쟁채용시 험의 실시권과 의무경찰로 임용 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 에 대한 순경으로의 경력경쟁채 용시험등의 실시권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하고, 경찰간 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 의 실시권을 경찰대학의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시 험출제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시험출제업무를 할 수 있다.		제33조(시험실시권)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순 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 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 임할 수 있고, 경찰간부후보생 의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실시권 을 경찰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 ----- ----- ----- -----.		
제43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 체력 검사는 각 평가종목에 실격이 없고 전 평가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43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 체력 검사는 순환식 체력검사에서 우 수등급을 받거나 종목식 체력검 사에서 각 평가종목에 실격이 없고 전 평가종목 총점의 40퍼 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 격자로 결정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 삭제

<신 설>

제43조의3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여성
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3
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
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
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
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정책담당관	
연 락 처	02-3150-2832